

의안번호	제 46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6월 24일

#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460
----------	-----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제안연월일 : 2020년 6월 24일

## 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 제1조(목적)에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근거조례인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를 명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근거조항 명시(안 제1조)
  -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 제1조(목적)에 “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” 근거 명시

## 3.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의회”를 “『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』 제2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충청북도</u> <u>의회</u>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충청북도</u> <u>의회 기본 조례</u>」 제27조에 따라 <u>충청북도의회</u> ----- --.</p>